

#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정호열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삼부파이낸스(주)의 부당광고 사건

1999.9.6.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199-135호 / 사건번호 9905광사10665

### I. 사실개요

피심인 삼부파이낸스(주)는 1999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 330억원, 매출액 74억 9천만원, 상시종업원 346명을 가진 주식회사로서, 금융대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영업수행과 관련하여 1997년 12월에서 1999년 3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안내전단과 부산일보 등 8개 신문지면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거듭된 광고를 하였다.

- “· 여신전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 업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
- 주주의 권리를 보장
- 1998년 1월 1일 재정경제원 등록 할부금융업에 진출, 자본금 1,000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II.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그 이유

#### 1. 시정조치의 내용

가. 피심인은 영업활동과 관련한 광고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의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 가목(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표



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반환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듯이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자금을 맡긴 고객이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재정경제부 등록 할부금융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금 1,000억원으로 증자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1일 재정경제원 할부금융업에 진출, 자본금 1,000억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4단×15cm로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에 5단×18.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각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III. 논평

#### 1. 서설

이 사건은 너무나 흔한 부당광고행위의 하나이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망라한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을 부풀려서 과대선전하거나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금융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었거나 부당비교를 행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숱하게 보아 온 일이다. 그리고 많은 수의 심결례의 축적을 통하여 공정위의 부당선전광고에 대한 입장도 이제는 안정되어 있어,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광고문언은 진실성의 검증이나 부당성의 추출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그 결과 심결례가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부당광고에 관한 경쟁법적 법리의 전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기대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논평의 대상으로 고른 것은 이 사건의 피심자인 파이낸스사나 이와 유사한 영업을 행하는 벤처 캐피탈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사업자들의 대량 도산과 이로 인한 파장이 너무나 엄청나서 부산지역경제의 파탄이 우려되는 반면에,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초에 불거져 나온 파이낸스 사태는 파생금융시장의 미성숙과 감독당국의 무정견과 감독방지, 사업자의 기만적 허장성세와 여기에 현혹된 서민들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례를 보면서 우리는 공정위의 기능이 오로지 바람직한 경쟁정책의 구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감독기능의 전초수단으로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감독에 같음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혹은 경찰로서의 중요하고도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경쟁법적 쟁점을 지적한 후에, 금융감독적 견지에서 약간의 춘평을 가한다.



## 2. 광고의 오인유발성

### 가. 부당광고행위 일반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상의 부당광고행위의 유형은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그리고 비방적 표시광고의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고, 각각의 유형의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허위과장성, 기만성, 비방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네 유형의 부당광고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당해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 본문 후단 참조)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오인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추상적인 적격성으로 충분하다.

부당광고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당해 표시광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다<sup>1)</sup>. 즉 객관적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표시, 광고가 겨냥하는 수요자권의 평균적 소비자가 그 선전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인상을 받는다면, 소비자의 오인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흔히 지적되는 것이지만, 홍콩산이 본토 중국을 연상시키는 문귀로 출처가 표시된 경우, 부분적인 진실을 부각시킴으로서 상품 전체의 품질에 관한 전반적인 허위가 호도되는 경우 혹은 사업주의 출신지역이나 전과자인 사실을 선전문구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그 자체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을 필요없이 방해하는 경우<sup>2)</sup> 등이 그러하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거짓선전인 경우에는 물론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평균적 소비자가 당해 광고로 인해 오도되지 않는다면 규제의 실익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표시광고로서 규제되기 위해서는 선전문귀가 사실적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3)</sup>. 사실적인 핵이 없는 경우라면, 표시광고의 진실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나. 경쟁법적 검토

이 사건의 피심인은 삼부파이낸스 주식회사이다. 피심인의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로서의 적격성은 쉽사리 인정된다. 금융시장 전반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고, 피심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법 수범자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이나 회사 등의 상인은 물론, 중간법인, 공법인, 심지어는 국가 등의 일반공법인도 수범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경제적 경쟁관계에 개입하는 한 경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피심인은 실정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감독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문귀를 구사하였다. 피심인의 이 선전은 제도권금융

1) Emmerich 저/정호열 역, 부정경쟁법, 삼지원, 1996, 238~9면.

2) 소위 독일에서 말하는 인적 선전(人的宣傳)에 해당된다. 앞의 책, 129면 참조.

3)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216~7면.



사업자들이 누리고 있는 국민 일반으로부터의 광범한 신뢰에 부당하게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 평균적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위험이 충분히 인정된다.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의 소위 제도권 금융사업자들은 기업의 법적 형태나 자본금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또 당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인허가나 영업보증기금의 예탁 등의 진입장벽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전예탁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 그 반환이 보장되고 있다. 피심인의 선전은 상법상의 일반주식회사로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듯한 오신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정경제부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입장벽을 통과한 듯이 표현한 선전문귀 등은 제도권금융사업자인 듯한 오인을 유발하는 것이고, 파이낸스에 금원을 맡긴 자가 단순한 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주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가 주주라는 오신을 유발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이 3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으로 증자된 듯이 선전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업자로서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요컨대 피심인의 선전문귀 중에서 공정위가 문제삼은 사항들은 모두 사실적 핵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이들 선전주장의 오인유발성은 쉽사리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금년에 제정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심결은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삼부파이낸스의 선전이 구법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법의 추급적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 3.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파생금융사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의 문제

#### 가. 공적감독과 독점규제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사업은 준공익사업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탁법 등의 단행 감독법규(정확하게는 공사혼합법규)를 통해 엄격한 감독을 받아 왔으며, 주요 금융시장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본적 양상은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정책은 금융부문을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종합금융, 투자금융, 상호신용, 여신전문금융 등의 분야로 시장을 가능한 한 세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구획을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겸업금지(兼業禁止) 또는 전업주의(專業主義) 조항을 두어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에만 전념도록 하고, 또 각각의 시장진입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상의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사업자들은 설립과 영업 그리고 해산과 청산의 전과정, 다시 말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독관청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개입을 받아 왔고, 감독관청의 선단감독(船團監督)하에서 “금융회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조성되어 온 것이다.

미국식 산업조직론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 즉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기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남용하면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를 가하고, 그리고 자연 독점사업 내지 대규모 인프라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쟁적인 영위가 비효율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요율통제 등의 공적감독(public regulation)을 가하는 것으로 된다.

즉 독점에 대한 규제와 공적 규제는 근본적으로 선택적인 셈인데,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동법의 적용확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는 공정거래법의 광범한 적용제외의 특혜를 누려왔던 보험산업도 금년 1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 적용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sup>4)</sup>.

#### 나.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저질 파생금융업자의 양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금융정책의 변화를 요약하면, 감독관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그 자리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되 이로 인한 폐단은 독점규제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드세하고 있는 보수적 시장주의 내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우리 나라도 규제 완화 내지 탈규제의 물결을 타면서 금융시장 역시 과도기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실증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금융감독법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작업이다. 이 개편의 핵심은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적 분할을 철폐하고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사업에 대한 광범한 겹영을 허용하는 데 있고, 이는 수십년간 정착되어 온 금융정책에 대한 근본적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구획완화 그리고 진입장벽의 철폐와 더불어, 1998년 초의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의 활성화에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즉 고리(高利)를 엄격하게 규제하던 이자제한법이 IMF와 미국의 요구로 폐지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소위 고리대금업자들이 비제도권 금융사업자 혹은 파생금융사업자로 탈바꿈한 채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취하면서, 제도권 금융시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금융감독당국의 간섭과 통제 밖에서 그야말로 온전한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은 OO파이낸스, OO창업투자, OO기술투자, OO에셋창업투자, 벤처 캐피탈 등의 혼란한 상호를 달고 있으며, 영업내용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들 조차 그 실체를 쉽사리 알 수 없는 헛지펀드, 골드 스폿펀드 등의 혼탁적인 상품명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벤처산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사업자들인양 처신하고, 특히 국민 일반의 뇌리에 각인되기 쉬운 용거리, 은행나무침대, 이재수의 난, 쉬리 등의 영화제작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sup>5)</sup>.

#### 다. 금융당국의 방치와 감독장치의 보완필요성

지난 9월의 파이낸스 사태의 근본원인은 IMF환란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부산지역에서 제도권 여신이 마비되다시피 한 IMF환란 직후에 이들은 급박한 사정에 몰린 다수의 부산지역 사업자들에게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금년 들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복구되고 제도권 금융이 기업대출을 재개하면서 이들의 고리채 영업기반은 급속하게 붕괴되기에 이른

4) 이에 관하여는 출고, 보험산업과 소비자보호 -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상사법학회 1999년 7월 1일 하계특별심포지움 프로시딩 참조.

5) 이들의 고리채를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사정을 생각할 때 이들의 여신이 부실화할 위험은 대단히 높다. 또 이들은 유통업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여신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것이다.

전국 700여개가 넘는 파이낸스사들이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무려 10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금규모나 자금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sup>6)</sup>. 이들에 대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닌 관계로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할 수 없고, 또 금융당국도 이들이 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들의 영업행태가 금융피라미드의 성격을 지니거나 증권거래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혐의가 다수 포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금융피라미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철퇴를 가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청하는 것은 여신금융업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리고 삼부파이낸스가 사모펀드인 헛지펀드를 내세우고 신문광고와 투자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공개모집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의 명문규정에 대한 위반이고, 유사투자신탁을 금지한 투자신탁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권 금융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이나 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나 등록의 말소,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과태료의 부과 등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관청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이를 사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감독법규는 당해 법규에 의해 설립되고 영업허가나 등록을 행한 사업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시장을 가능한 한 세분하고 또 이를 각각에 대해 엄격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파생금융사업자들의 일탈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소지 자체가 대단히 작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탈의 가능성성이 낮은 제도권 금융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파생금융사업자들이 개별 금융단속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검찰청에 고발을 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파생금융사업자들이 개별 단속법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규, 즉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정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당연히 준용하여 철퇴를 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입법정신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sup>8)</sup>.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금융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법규에서 감독의 근거와 구체적 규제수단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이들의 비행을 항상 감시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6) 삼부나 청구파이낸스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주들의 횡령과 회사재산의 남용의 심각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고(매일경제신문 9월 10일자 보도 참조), 청구파이낸스사의 경우에는 연리 25~28%의 고수익을 미끼로 3천여의 투자자로부터 1천억이 넘는 자금을 끌어 들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매경 9월 14일자 보도).

7) 금융감독원, 부산시(방문판매법상 주무관청), 그리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미 1999년 1월 초부터 파이낸스사의 도산 조짐을 감지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매경 9월 17일자 보도).

8) 미국의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피라미드사업자의 행태에 대해 증권거래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근거로는 다단계조직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증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동법 소정의 면허없이 이들 영업을 수행한 사실과 증권거래법 소정의 사기금지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다루게 된다. SEC v. Continental Commodities Corporation, 497 F. 2d 516(5th Cir. 1974).

## 4. 맷는말

삼부와 청구 파이낸스 등 파생금융시장의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당국은 여하한 방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평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이 사태의 궁극적 원인이 금융감독정책의 소홀함에 있고, 감독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당국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다. IMF환란으로 인한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가져 온 과장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연히 면밀한 주의를 베풀면서 사태의 심각화를 미리 막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시장 구조조정 정책, 즉 금융재벌의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나 겹업금지조항의 철폐나 유니버설 뱅킹의 광범한 허용 등도 지나치게 과격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정책이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금융자율화의 원조라고 할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겹영을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업이나 보험업에 대해 진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강력한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막중한 감독권을 금감위가 전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소지가 있다. 행정부의 경우 정파적, 지역적 이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고 그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감독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은 근본적으로 대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권시장의 일시적 후퇴로 인해 자금이 대거 은행권으로 환류하고 있는 현상이나 IMF환란 직후 생명보험 해약사태 등이 이를 실증한다. 그러나 각 감독법규에서 가하고 있는 규제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고, 예컨대 금융당국이 보험자산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보험자산의 운용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경우 주로 서민층으로 구성된 생명보험계약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회생시키는 것이다. 규제의 완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대체재의 성격을 지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결을 통해 부산지역의 파이낸스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규제를 가하였고, 이는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기능을 보여 준 것으로 평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생금융사업자를 중 상당수가 금융피라미드라는 점과 금융피라미드의 파괴적 성격을 생각할 때, 공정위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주무관청에만 이를 일임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 역시 기관적 수법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이들을 규제함으로서 금융피라미드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